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과의 유원시설 및 야영장 재난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 국립국어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2명(6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 국립국악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며, 국립국악원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국악원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국가홍보 기획 등 업무 유관성을 고려하여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에서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홍보콘텐츠과로 이관하고,

조직 내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유사 명칭의 조직과의 구분 등을 위해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과의 명칭을 소통기반과로 변경,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의 명칭을 수어점자진흥과로 변경하며,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00.00. ~ 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0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

제10조제6항 중 “소통정책과·소통협력과·소통지원과·콘텐츠기획과·여론과·분석과·디지털소통정책과·정책포털과·디지털소통콘텐츠과 및 뉴미디어소통지원과”를 “소통정책과·소통협력과·소통기반과·콘텐츠기획과·여론과·분석과·디지털소통정책과·정책포털과·디지털소통콘텐츠과 및 뉴미디어소통지원과”로 하고, 제10조제9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소통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제4항제1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의 “어문연구과·언어정보과·한국어진흥과 및 특수언어진흥과”를 “어문연구과·언어정보과·한국어진흥과 및 수어점자진흥과”로 하고, “어문연구과장·언어정보과장 및 특수언어진흥과장”를 “어문연구과장·언어정보과장 및 수어점자진흥과장”으로 하며, 제25조제6항 본문 및 각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수어점자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라 한다) 및 점자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수어 및 점자의 정보화, 표준화 및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에 관한 사항
3. 수어 및 점자에 대한 교육·연수, 교원 자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수어 및 점자와 관련된 상담에 관한 사항
5. 수어 및 점자의 국내외 교류 및 민간 부분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수어 및 점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어 및 점자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6조 중 “학예연구관”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3항 중 “문관광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741”를 “738”로, 일반직 계 “734”를 “731”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83”을 “182”으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94”를 “19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8”을 “97”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749”를 “746”으로, 일반직 계 “742”를 “739”로, 행정
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
03”을 “202”로 하고,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
사 · 전산주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89”를 “187”
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84”를 “576”으로, 일반직 계 “583”를 “575”로, 행정주사
“18”을 “17”로, 공업주사 “6”을 “5”로, 공업주사보 “5”를 “4”로, 공업서기
“15”를 “14”로,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5”를 “6”으로, 방호서기보 “120”
을 “118”로, 운전서기보 “17”을 “16”으로, 학예연구사 “153”을 “151”로 한
다.

별표 3의2 중 총계 “584”를 “576”으로, 일반직 계 “583”를 “575”로, 행정
주사 “18”을 “17”로, 공업주사 “5”를 “4”로, 공업주사보 “4”를 “3”으로, 공
업서기 “15”를 “14”로,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5”를 “6”으로, 방호서기
보 “120”을 “118”로, 운전서기보 “17”을 “16”으로, 학예연구사 “149”를 “1
47”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53”을 “52”로, 일반직 계 “53”을 “52”로, 학예연구관 “1
1”을 “10”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305”를 “303”으로, 일반직 계 “305”를 “303”으로, 행정주
사 “11”를 “10”으로 하고, “임업서기”를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임업

서기”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305”를 “303”으로, 일반직 계 “305”를 “303”으로, 행정주사 “11”를 “10”으로 하고, “임업서기”를 “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임업서기”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2”를 각각 “161”로, “고위공무원단 1”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로 하며, 행정서기 “10”을 “9”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2”를 각각 “161”로, “고위공무원단 1”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로 하며, 행정서기 “10”을 “9”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95”를 “94”로, 일반직 계 “95”를 “94”로, “시설사무관”을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임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로 하고,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을 신설하며, “공업서기보 1”과 “위생서기보 1”을 삭제하고, 학예연구사 “37”을 “36”으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51”를 “50”으로, 일반직 계 “51”를 “50”으로, 행정사무관 “3”을 “2”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119”를 “118”로, 일반직 계 “119”를 “118”로, 3급 또는 4급 이하 “117”을 “116”으로 한다.

별표 14를 삭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3항 중 “문관광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1명(7급 1명)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① ~ ⑨ (생 략) ⑩ 해외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⑪ · ⑫ (생 략)	제8조의2(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u> ⑪ · ⑫ (현행과 같음)
제10조(국민소통실) ① ~ ⑤ (생 략) ⑥ 국민소통실에 <u>소통정책과 ·</u> <u>소통협력과 · 소통지원과 · 콘텐</u> <u>츠기획과 · 여론과 · 분석과 · 디</u> <u>지털소통정책과 · 정책포털과 ·</u> <u>디지털소통콘텐츠과 및 뉴미디</u> <u>어소통지원과</u> 를 두되, 소통정책 과장 · 여론과장 · 소통협력과장 · 소통지원과장 및 콘텐츠기획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 로, 분석과장 · 디지털소통정책 과장 · 정책포털과장 · 디지털소 통콘텐츠과장 및 뉴미디어소통 지원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 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	제10조(국민소통실) ① ~ ⑤ (현 행과 같음) ⑥ ----- <u>소통정책과 ·</u> <u>소통협력과 · 소통기반과 · 콘텐</u> <u>츠기획과 · 여론과 · 분석과 · 디</u> <u>지털소통정책과 · 정책포털과 ·</u> <u>디지털소통콘텐츠과 및 뉴미디</u> <u>어소통지원과</u> ----- ----- ----- ----- ----- ----- ----- ----- -----

다.

⑦·⑧ (생략)

⑨ 소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발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총괄

2. 국정현안별 이슈 관리 및 홍보

3. 정책홍보 환경 분석, 홍보기법 연구·개발 및 보급

4.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 메시지 개발 및 활용

5.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컨설팅 및 활용 지원

6.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영상물의 기획·제작 및 보급

⑩ ~ ⑯ (생략)

제13조(미디어정책국) ① ~ ③ (생략)

④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

⑤ (생략)

--.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소통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⑯ (현행과 같음)

제13조(미디어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2. (현행과 같음)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어문연구실) ① (생략)

② 어문연구실에 어문연구과 · 언어정보과 · 한국어진흥과 및 특수언어진흥과를 두되, 어문연구과장 · 언어정보과장 및 특수언어진흥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한국어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⑥ 특수언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언어(한국수화언어 및 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2. 특수언어의 정보화, 표준화 및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 · 발간에 관한 사항
3. 특수언어에 대한 교육 · 연수, 교원 자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특수언어와 관련된 상담에 관한 사항
5. 특수언어의 국내외 교류 및 민간 부분 활동 촉진에 관한

제25조(어문연구실) ① (현행과 같음)

② ----- 어문연구과 · 언어정보과 · 한국어진흥과 및 수어점자진흥과-----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⑥ 수어점자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라 한다) 및 점자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2. 수어 및 점자의 정보화, 표준화 및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 · 발간에 관한 사항
3. 수어 및 점자에 대한 교육 · 연수, 교원 자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수어 및 점자와 관련된 상담에 관한 사항

<u>사항</u> 6. <u>특수언어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u> 7. <u>특수언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제36조(원장) 국립국악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u>학예연구관</u>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5. <u>수어 및 점자의 국내외 교류 및 민간 부분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u> 6. <u>수어 및 점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u> 7. <u>수어 및 점자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제36조(원장) ----- ----- <u>일반직 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u>-----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 ⑫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⑬ ----- -----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중	----- ----- ----- ----- ----- -----
“ <u>문관광부장관</u> ”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u>문화관광부장관</u> -----
⑭ ~ (생략)	----- ⑭ ~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741</u>	<u>738</u>	△3
·	·	·	
·	·	·	
일반직 계	<u>734</u>	<u>731</u>	△3
·	·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학예연구관	<u>183</u>	<u>182</u>	△1
·	·	·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u>194</u>	<u>193</u>	△1
·	·	·	
·	·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 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98</u>	<u>97</u>	△1
·	·	·	
·	·	·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49</u>	<u>746</u>	△3
·	·	·	
·	·	·	
일반직 계	<u>742</u>	<u>739</u>	△3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 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 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 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학예연구관	<u>203</u>	<u>202</u>	△1
·	·	·	
·	·	·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 ·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 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u>189</u>	<u>187</u>	△2
·	·	·	
·	·	·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584</u>		<u>576</u>	△8
	•		•		•	
	•		•		•	
일반직 계			<u>583</u>		<u>575</u>	△8
	•		•		•	
	•		•		•	
행정주사			<u>18</u>		<u>17</u>	△1
	•		•		•	
	•		•		•	
공업주사			<u>6</u>		<u>5</u>	△1
	•		•		•	
	•		•		•	
공업주사보			<u>5</u>		<u>4</u>	△1
	•		•		•	
	•		•		•	
공업서기			<u>15</u>		<u>14</u>	△1
	•		•		•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5</u>		<u>6</u>	+1
	•		•		•	
	•		•		•	
방호서기보			<u>120</u>		<u>118</u>	△2
	•		•		•	
	•		•		•	
운전서기보			<u>17</u>		<u>16</u>	△1
	•		•		•	
	•		•		•	
학예연구사			<u>153</u>		<u>151</u>	△2
	•		•		•	
	•		•		•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584</u>		<u>576</u>	△8	
	•		•		•		
	•		•		•		
일반직 계			<u>583</u>		<u>575</u>	△8	
	•		•		•		
	•		•		•		
행정주사			<u>18</u>		<u>17</u>	△1	
	•		•		•		
	•		•		•		
공업주사			<u>5</u>		<u>4</u>	△1	
	•		•		•		
	•		•		•		
공업주사보			<u>4</u>		<u>3</u>	△1	
	•		•		•		
	•		•		•		
공업서기			<u>15</u>		<u>14</u>	△1	
	•		•		•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5</u>		<u>6</u>	+1	
	•		•		•		
	•		•		•		
방호서기보			<u>120</u>		<u>118</u>	△2	
	•		•		•		
	•		•		•		
운전서기보			<u>17</u>		<u>16</u>	△1	
	•		•		•		
	•		•		•		
학예연구사			<u>149</u>		<u>147</u>	△2	
	•		•		•		
	•		•		•		

[별표 4]

국립국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53</u>	<u>52</u>	△1
	•		•	•	
	•		•	•	
일반직 계			<u>53</u>	<u>52</u>	△1
	•		•	•	
	•		•	•	
학예연구관			<u>11</u>	<u>10</u>	△1
	•		•	•	
	•		•	•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05</u>	<u>303</u>	△2
•	•	•	
•	•	•	
일반직 계	<u>305</u>	<u>303</u>	△2
•	•	•	
•	•	•	
행정주사	<u>11</u>	<u>10</u>	△1
•	•	•	
•	•	•	
	<u>임업서기</u>	<u>공업서</u>	
	<u>1</u>	<u>기·시설</u>	
		<u>서기 또</u>	-
		<u>는 임업</u>	
		<u>서기 1</u>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u>	<u>3</u>	△1
•	•	•	
•	•	•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05</u>	<u>303</u>	△2
	•		•	•	
	•		•	•	
일반직 계			<u>305</u>	<u>303</u>	△2
	•		•	•	
	•		•	•	
행정주사			<u>11</u>	<u>10</u>	△1
	•		•	•	
	•		•	•	
	—		<u>임업서기</u> <u>1</u>	<u>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임업서기 1</u>	—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u>	<u>3</u>	△1
	•		•	•	
	•		•	•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62</u>	<u>161</u>	△1
•	•	•	
•	•	•	
일반직 계	<u>162</u>	<u>161</u>	△1
•	•	•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u>			
<u>학예연구관</u>	<u>2</u>	<u>1</u>	<u>△1</u>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u>			
<u>또는 학예연구관</u>	<u>•</u>	<u>1</u>	<u>+1</u>
•	•	•	
행정서기	<u>10</u>	<u>9</u>	△1
•	•	•	
•	•	•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62</u>	<u>161</u>	△1
·	·	·	
·	·	·	
일반직 계	<u>162</u>	<u>161</u>	△1
·	·	·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u>			
<u>학예연구관</u>	<u>2</u>	<u>1</u>	<u>△1</u>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u>			
<u>또는 학예연구관</u>	<u>·</u>	<u>1</u>	<u>+1</u>
·	·	·	
행정서기	<u>10</u>	<u>9</u>	△1
·	·	·	
·	·	·	

[별표 8]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95</u>	<u>94</u>	△1
·	·	·	
·	·	·	
일반직 계	<u>95</u>	<u>94</u>	△1
·	·	·	
·	·	·	
—	<u>시설사무관 1</u>	<u>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u>	—
·	·	·	
·	·	·	
	<u>행정서기보</u>	<u>행정서기보</u>	
	<u>·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임업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u>	<u>·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임업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u>	
	·	·	
	·	·	
	<u><신 설></u>	<u>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u>	+1

학예연구사	.	.	.	
	.	.	.	
	-	<u>공업서기보 1</u>	<u><삭 제></u>	△1
	.	.	.	
	.	.	.	
	-	<u>위생서기보 1</u>	<u><삭 제></u>	△1
	.	.	.	
	.	<u>37</u>	<u>36</u>	△1
	.	.	.	
	.	.	.	

[별표 8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51</u>		<u>50</u>	△1	
	•		•		•		
	•		•		•		
일반직 계			<u>51</u>		<u>50</u>	△1	
	•		•		•		
	•		•		•		
행정사무관			<u>3</u>		<u>2</u>	△1	
	•		•		•		
	•		•		•		

[별표 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19</u>		<u>118</u>	△1	
		•	•		•		
		•	•		•		
일반직 계			<u>119</u>		<u>118</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17</u>		<u>116</u>	△1	
		•	•		•		
		•	•		•		

[별표 14]

현 행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9조 관련)			<삭 제>
조직	정원	평가기간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6명 (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